###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17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전진숙・남인순・안도걸

양부남 · 정준호 · 이수진

박희승 • 조인철 • 정진욱

민형배 • 권칠승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폭력을 "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행위"로 정의하고 있으나, 사회재 난 등에 있어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음.

이에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

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행사에"를 "행사 또는 불행사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국가폭력"이란 1945년 8월	1		
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			
법적 <u>행사에</u> 의하여 국민의	<u>행사 또는 불행사에</u>		
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			
침해한 행위로서 민간인 집단			
희생, 사망・고문・상해・실			
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			
작의혹, 테러·폭력·학살, 군			
의문사 및 「제대군인지원에			
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제			
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			
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			
행위를 말한다.		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